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의 안 번 호 | 26-132 |
|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26. 11. .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경제 및 건강 취약계층 대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사각지대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감염 확산 감소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예방접종대상(안 제2조)

- 경제 및 건강의 사각지대에 있는 15~64세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상자 확대
- 기존 경제 취약계층은 의료·생계급여자 → 생계, 주거, 의료,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지원
- 기존 건강 취약계층은 심한 장애인, 국가유공자 →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까지 확대하여 지원

나. 예방접종 비용(안 제7조)

-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변경

다.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(안 제8조)

- 보건복지부를 질병관리청으로 변경

## 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, 제25조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　　의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1) 입법예고: 2026. 10. 15.~2026. 11. 4. (제출된 의견 없음)

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: 원안 동의

3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: 원안 동의

4) 가족정책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마목을 바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

마. 「희귀질환관리법」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

제7조 중 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”을 “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”으로 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”를 “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 --- | --- |
| 제2조(예방접종대상)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(이하 “무료 예방접종”이라 한다)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단,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자는 제외한다. | 제2조(예방접종대상) 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<br>----------.<br>----------<br>----------. |
| 1. (생 략) | 1. (현행과 같음) |
| 가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권자 |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|
| 나. ~ 라. (생 략) | 나. ~ 라. (현행과 같음) |
| <신 설> | 마. 「희귀질환관리법」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 |
| 마. (생 략) | 바. (현행 마목과 같음) |
| 2. (생 략) | 2. (현행과 같음) |
| 제7조(예방접종 비용)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보건복지 | 제7조(예방접종 비용) ----------<br>---------- 질병관리 |

| | |
|---|---|
| 부장관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과 같게 정한다. | 청장이 공고하는 ----------. |
| 제8조(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) ①·② (생 략) | 제8조(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|
| ③ 예방접종비용의 상환 신청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 「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다. | ③ ----------<br>----------<br>않은 ----질병관리청 ----------. |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가. 조례안 제2조(예방접종대상)

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가.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12조 2항

## 3. 미첨부 사유

조례안 제2조(예방접종대상) 대상 추가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이 아님

## 4. 작성자

| 작성자 이름 | 보건소 건강증진과 유효선 |
|---|---|
| 연 락 처 | 02-3153-9074 |